

# 서울특별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 
번호 1797

제출년월일 : 2020년 8월 12일  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## 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시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은 「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의해 실시되는 사업이며,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(업무의 위탁 및 대행)에 근거하여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위탁운영 중인 사업으로서,
- 나.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의 효율적 기술지원을 위하여 전문성과 노하우를 겸비한 기관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사업 목적 및 목표

#### ○ 사업 목적

- 만성질환예방·관리에 대한 지속적 대시민 홍보로 사회적 공감대 확산
- 지역사회 중심의 고혈압·당뇨병 건강관리 활성화로 환자 자가관리능력 향상
- 보건소사업 기술지원, 담당인력 교육 등 지역사회 만성질환 관리수준 향상 도모

#### ○ 사업 목표

목표	평가지표 (%)	현재 (2018)	2020년	2022년	자료원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장기목표: 고혈압·당뇨병의 합병증 감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뇌졸중 초기증상 인지율 증가(표준화율) 54.3</li> <li>-심근경색증 초기증상 인지율 증가(표준화율) 52.5</li> </ul> </li> </ul>				61.0 55.0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중기목표: 고혈압·당뇨병의 관리수준 향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고혈압 진단 경험자의 치료율(≥30) 증가 93.2</li> <li>-당뇨병 진단 경험자의 치료율(≥30) 증가 89.9</li> <li>-고혈압 관리교육 이수율(≥30) 증가 40.4</li> <li>-당뇨병 관리교육 이수율(≥30) 증가 49.0</li> </ul> </li> </ul>		(2018)	94.0 90.0 41 50		지역사회 건강통계

- 장기목표: 고혈압,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 예방
  - 서울시민 중 고혈압·당뇨병 유병자의 합병증 예방
- 중기목표: 고혈압·당뇨병 관리수준 향상(치료율, 조절률, 교육이수률 등)
  - 고혈압·당뇨병 지속치료 향상 및 건강형태 개선
  - 서울시민 중 고혈압·당뇨병 유병자의 자기건강관리 능력 강화
- 단기목표: 고혈압·당뇨병의 인식률 증가
  - 고혈압·당뇨병 표준교육 질 향상 및 인식도 향상을 통한 시민 참여 유도
  - 고혈압·당뇨병 표준교육 질 향상을 위한 서울시 전문강사 교수 능력개발 강화
- 중기 결과목표
  - 고혈압 진단 경험자의 치료율을 현재(2018) 93.2%에서 '20년 94.0%로 증가
  - 당뇨병 진단 경험자의 치료율을 현재(2018) 89.9%에서 '20년 90.0%로 증가
    - ※ HP2020 목표인 고혈압치료율 64%, 당뇨병치료율 65%는 이미 초과달성
    - 2020년 목표는 2018년 현황을 기준으로 목표 설정
  - 고혈압 관리교육 이수율을 현재 40.4%에서 '20년 41.0%
  - 당뇨병 관리교육 이수율을 현재 48.9%에서 '20년 50%
    - ※ 고혈압 관리교육 이수율은 2019년 설정 2020 목표 초과달성하여 2018년 현황을 기준으로 설정
    - 당뇨병 관리교육 이수율은 HP2020 목표로 설정

## 나. 주요위탁 내용

- 위탁기간 : 3년(2021.1.~2023.12.31.)
- 위탁업무
  - 고혈압 당뇨병 환자 발견체계 강화
  - 자치구 보건소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서비스 질 강화지원
  -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인식수준 개선 홍보
  - 국가 만성질환관리사업과 보건소 연계사업 협력 및 지원
  - 시민건강포인트사업 지원 등
- 소요예산 : 69,412,000원
- 수탁기관 선정방법 : 공개모집(재위탁)

## 다.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현황

### ○ 민간위탁 추진근거

-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(업무의 위탁 및 대행),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

### ○ 민간위탁 추진현황

일자	연혁
2008.8.1	민간위탁1차 협약(2008.8.1. ~ 12.31.), 강북 삼성 병원(1년)
2009.4.1.	민간위탁2차 협약(2009.4.1. ~ 12.31.), 강북 삼성 병원(1년)
2010.7.1.	민간위탁3차 협약(2010.7.1. ~ 12.31.), 강북 삼성 병원(1년)
2011.7.27.	민간위탁4차 협약 (2011.7.27.~ 2013.2.10.),강북 삼성 병원(2년)
2013.6.1.	민간위탁운영 5차 협약 (2013.6.1.~2014.12.31.)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(2년)
2015.5.1.	민간위탁운영 6차 협약(2015.5.1.~ 018.4.30.),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(3년)
2018.5.1.	민간위탁운영 7차 협약(2018.5.1.~2020.12.31.),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(3년)

## 라. 민간위탁(재위탁) 필요성

- 서울특별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지원단의 주요 위탁사무는 심뇌혈관질환 인식수준 개선 홍보사업, 고혈압·당뇨병 환자 발견체계 구축, 보건소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 서비스 질 강화, 시민건강포인트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며
-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의 효율적 기술지원을 위하여 전문성과 노하우를 겸비한 기관에 향후 3년

간 민간위탁을 통하여 시민의 고혈압, 당뇨병 환자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만성질환관리를 맡기고자 민간위탁(재위탁) 적격자 공개모집·선정을 하고자 함.

### 3. 참고사항

#### 가. 관계법령

##### ○ 지역보건법 23조 시행령

제23조(업무의 위탁 및 대행)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건의료 관련기관·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4. 법 제11조제1항제5호바목에 따른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,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, 실험 또는 검사 업무

##### ○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, 제6조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
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9.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보건의료정책과 공공보건팀 이은숙 (☎2133-7525)